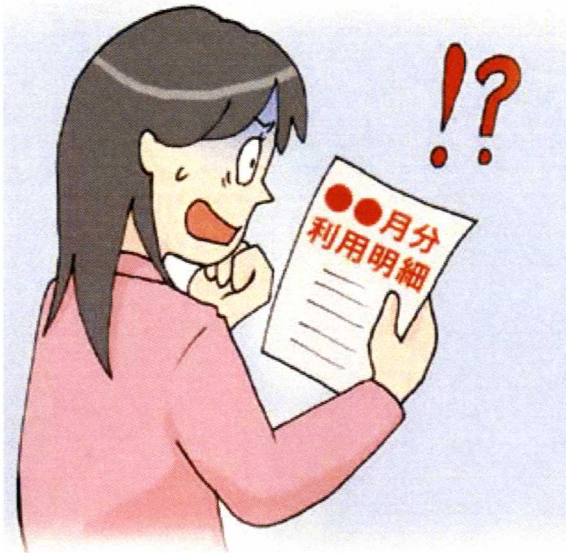


# 카드범죄

'카드'가 당신의 인생까지.....



## ☞ 이용하기 전에

**필요하지 않은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.**  
**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**

○설령 애인이라도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는다.

**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피한다.**

○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번호는 피한다.

**카드는 현금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따로 갖고 다닌다.**

**수상한 가게에서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.**

○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이용한다.

○인터넷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이용한다.

※ 15쪽의 '인터넷사기 등'도 참고하십시오.



##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○지불을 위해 카드를 맡겼을 때는 카드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는다.

○점원이 카드를 점포 안으로 가지고 갔을 때는 특히 주의하며,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처리하도록 점원에게 말한다.

○계산대에서 건네받은 고객용 매출전표는 소중히 보관하며, 나중에 카드회사가 발송한 카드 이용명세와 고객용 매출전표의 내용을 반드시 바로 대조한다(조금이라도 빨리 스키밍 등의 피해를 알 수 있다).

※스키밍.....카드를 위조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기(磁器)정보를 훔쳐내는 것.



##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.....

○카드 도난 피해나 스키밍 피해를 알았을 때는 신속히 카드회사에 연락한다.

○경찰에도 신고한다.



## 피해 후의 대응

○보상 등에 관하여 카드회사에 상의한다.

## ☞ 도난(위조)카드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하여

**현금카드를 도난당한 후 현금자동지급기(ATM)에서 예금이 인출된 경우[예금자보호법]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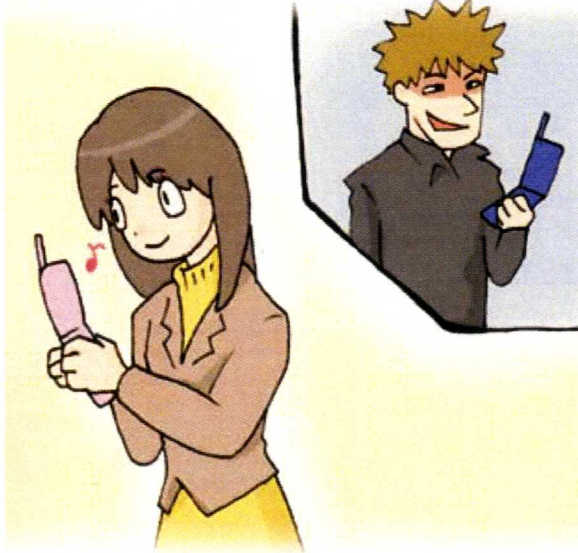
○도난당한 날이나 예금이 최초로 인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함(부득이한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되지만, 보상청구는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).

보상액은 '과실'이 있으면 감액되며, '과실'이 큰 경우는 보상받지 못한다(위조카드에 의한 경우는 전액보상, 보상 청구기간 없음).

**도난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**

○신용카드를 발행한 회사의 규약에 따라 보장기간(카드회사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서를 송부한 후 60일 이내에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, 피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서를 수취한 지 2주일 이내에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)이 다르며, 또한 '과실'이 있으면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해 둔다(위조 시에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).

# 만남사이트 이용하지 않는다!!



## ☞ 주의할 점

###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

- 이성교제의 자리를 제공하는 만남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답글을 다는 등의 이용을 일체 하지 않는다.
- 만남사이트 업자가 보낸 듯한 광고메일에 회신을 하지 않는다. 이메일 주소는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문자와 숫자를 나열하는 등 복잡하게 만들어 스팸메일이 오지 않도록 한다.

### 보호자의 경우

- 만남사이트 이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집의 컴퓨터에 필터링 기능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에는 접속제한 조치를 하여, 자녀가 만남사이트를 접할 기회를 차단한다.
- 만남사이트 이용의 위험성과 부정한 글을 올리는 것 \* 이 범죄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, 만남사이트를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르친다.  
\*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만남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금전 등을 매개로 성적관계를 원한다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습니다.

### 일반인의 경우

- 만남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.
- 스팸메일에 회신하지 않는다.
- 부주의하게 직접 만나지 않는다.



##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- 이용하지 않는다, 부주의하게 상대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.

### 만났다면

- 아무 생각없이 차에 타거나 통행이 적은 장소에는 따라가지 않는다.
- 수상한 점이나 위험을 느끼면 즉시 상대방에게서 떨어져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방범경보기를 활용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.



##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.....

- 신속히 경찰에 상의한다.
-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이 와도 대응하지 않는다. 메일주소를 변경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한다.
-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상의한다.



